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유럽인권재판소

## 유럽인권협약 제15조에 대한 해설서

---

비상시의 의무 이행정지

2023년 2월 28일 개정

이 해설서는 재판소 사무국이 작성했으며 유럽인권재판소에 대해 구속력을 지니지 않습니다.

이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쇄물 또는 전자 출판물의 형태로 번역 또는 복제하고자 하는 출판사나 단체는 [번역본 복제 또는 재출판 요청](#) 문의 양식을 작성하여 승인 절차에 관한 정보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판례 해설서가 어느 언어로 번역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경우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인 번역\(Pending translations\)](#)'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해설서는 원래 영어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해설서는 정기적으로 개정되며 가장 최근에는 2023년 2월 28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이 해설서는 편집을 위해 수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 해설서는 <https://ks.echr.coe.in>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해설서 개정 관련 정보는 유럽인권재판소의 트위터 계정 [https://twitter.com/ECHR\\_CEDH](https://twitter.com/ECHR_CEDH)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번역물은 유럽평의회·유럽인권재판소의 동의를 받아 발간되었으며 이 번역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번역본 발행처(한국 헌법재판소)에 있습니다.

## 목차

목차.....	3
일러두기 .....	4
I. 일반 원칙 .....	5
II. 제15조제1항: 국가의 의무 이행정지가 유효할 수 있는 경우 .....	6
A. “...전쟁 또는 기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공공의 비상사태...” .....	6
B. “...상황의 긴급성에 의하여 엄격히 요구되는...조치...” .....	8
C. “...다만 이러한 조치는 [유럽인권협약 당사국의] 국제법상 다른 의무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	11
III. 제15조제2항: 이행정지할 수 없는 권리.....	13
IV. 제15조제3항: 통보 요건 .....	14
인용 판례 목록.....	16

## 일러두기

이 해설서는 유럽인권재판소(이하 “재판소”, “유럽재판소” 또는 “스트라스부르 재판소”)가 선고한 주요 판결과 결정에 관한 정보를 법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재판소가 발간하고 있는 유럽인권협약해설서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그 시리즈 중 이 해설서는 유럽인권협약(이하 “협약” 또는 “유럽협약”) 제15조에 관한 판례법을 분석하고 요약한 것입니다. 독자들은 이 해설서를 통해 이 분야의 주요 원칙들과 관련 판례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용된 판례는 리딩케이스이거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그리고 최근의 판결과 결정들 중에서 선별한 것입니다.\*

재판소는 판결과 결정을 통해 제소된 개별사건에 대해 판단할 뿐만 아니라, 보다 일반적으로 협약상의 원칙을 명확히 밝히고 보장하여 발전시킴으로써, 각국이 협약당사국으로서의 이행사항을 준수하도록 합니다(*Ireland v. the United Kingdom*, 1978, § 154, 1978년 1월 18일, Series A no. 25, 더 최근의 사건으로는, *Jeronovičs v. Latvia* [GC], 2016, § 109).

유럽인권협약 체제를 설립한 목적은 이처럼 공동의 이익에 관련된 공공정책의 문제들을 판단함으로써, 협약당사국들 전체의 인권보호 수준을 높이고 인권법제를 확충하는 것입니다(*Konstantin Markin v. Russia* [GC], § 89, no. 30078/06, ECHR 2012). 실제로, 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이 인권 분야에서 “유럽의 공공질서에 대한 헌법적 문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해 왔습니다(*Bosphorus Hava Yolları Turizm ve Ticaret Anonim Şirketi v. Ireland* [GC], no. 45036/98, § 156, ECHR 2005-VI, 더 최근의 사건으로는, *N.D. and N.T. v. Spain* [GC], nos. 8675/15 및 8697/15, § 110, 2020년 2월 13일).

최근 유럽인권협약 제15의정서는 협약 전문에 보충성의 원칙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원칙은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당사국과 재판소 간에 공동의 책임을 부과”하며, 국가 당국과 법원은 유럽인권협약과 그 의정서에 정의된 권리와 자유에 완전한 효력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국내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Grzęda v. Poland* [GC], § 324).

이 해설서는 협약의 해당 조항과 그에 관한 추가 의정서 조항들에 대해 주제어들을 표시해 두고 있습니다. 각 사건에서 다뤄진 법적 쟁점은 유럽인권협약과 그 의정서 본문에서 (대부분의 경우) 그대로 추출한 색인으로부터 선별한 주제어목록(*List of keywords*)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 판례가 수록된 HUDOC 데이터베이스(*HUDOC database*)는 주제어를 통한 검색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주제어검색을 이용하면 유사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판례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해당 사건에서의 논증과 결론이 주제어를 통해 요약되어 있음). 개별 사건의 주제어는 HUDOC에서 사건세부정보(Case Details) 태그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UDOC 데이터베이스 및 주제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UDOC 사용자 설명서(*HUDOC user manua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인용된 판례는 재판소와 유럽인권위원회(European Commission of Human Rights)의 공식 언어(영어 및 프랑스어) 중 하나 또는 두 언어 모두로 작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모든 인용문은 소재판부(Chamber)가 선고한 본안판결(judgment on the merits)에 대한 것입니다. 약칭 "(dec.)"은 재판소의 결정(decision)에서 인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GC]"는 해당 사건이 대재판부(Grand Chamber)에서 심리된 것임을 나타냅니다. 재판부의 판단이 있지만 이 개정판 발간 당시 최종적인 것이 아닌 때에는 별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I. 일반 원칙

### 협약 제15조 - 비상시의 의무 이행정지

“1. 전쟁 또는 기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공공의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어떠한 유럽인권협약 당사국이라도 상황의 긴급성에 의하여 엄격히 요구되는 한도 내에서 이 협약상의 의무 이행을 정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국제법상 다른 의무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적법한 전쟁행위로 인한 사망의 경우를 제외한 제2조 또는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7조에 대하여는 본 조를 근거로 한 어떠한 이행정지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의무 이행정지 권리를 행사하는 유럽인권협약 당사국이라면 취한 조치와 그 이유를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충분히 통보하여야 한다. 당해 국가는 그러한 조치가 언제 중지되고 협약 규정이 언제 다시 완전히 실행될 것인지 역시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HUDOC 주제어

전쟁(15-1) - 공공의 비상사태(15-1) - 국가 존립 위협(15-1) - 이행정지(15-1) - 상황에 의하여 엄격히 요구되는 한도(15-1) - 국제적 의무(15-1) - 이행정지의 통보(15-3)

1. 협약 제15조는 이행정지 조항이다. 본 조항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체약국이 협약상 특정 권리와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의무의 이행을 제한된 방식으로, 감독 하에 정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2. 제15조 본문은 이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4조가 되는 유엔 인권규약(Covenant on Human Rights) 초안의 제4조 초안을 기반으로 한다.<sup>1</sup>
3. 제15조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5조 제1항은 체약국이 협약상의 의무 이행을 유효하게 정지할 수 있는 상황을 정의한다. 또한, 이행정지 과정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제한하기도 한다. 제15조제2항은 협약 내 특정한 기본권이 이행정지되는 것을 막는다. 제15조제3항은 의무 이행을 정지하는 국가가 반드시 따라야 할 절차 요건을 명시한다.
4. 의무 이행을 정지한다고 해서 해당 국가가 앞으로는 협약에 포함된 권리를 보장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이행정지를 신청할 때의 관행은 체약국이 취하는 조치가 협약의 이행정지를 수반“할지도 모른다”라고 명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행정지 기간 동안 청구인이 협약에 따른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재판소는 우선 취해진 조치가 협약의 실질적 조항에 따라 정당인지 검토하고, 정당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 이행정지가 유효한지 판단하게 된다(예를 들어, *A.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2009, § 161; *Ireland v. the United Kingdom*, 1978, § 191; *Lawless v. Ireland* (no. 3), 1961, § 15 참조).
5. 따라서, 피청구국이 제4의정서 제2조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여 전국민에게 부과한 전반적인 봉쇄 조치에 관한 *Terheş v. Romania* (dec.), 2021, § 46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적용할 수 없는 물적 관할(ratione materiae)로 선언된

<sup>1</sup> 제15조 준비문서(Travaux préparatoires) 10페이지 및 부록 I을 참조한다(*document DH (56) 4*로 재판소 도서관 웹사이트 [www.echr.coe.int/Library](http://www.echr.coe.int/Library)에서 이용 가능). 미주인권협약(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에도 이행정지 조항이 있다(제27조). 아프리카인권헌장(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에는 해당 조항이 없다.

제5조제1항에만 오롯이 기대어 불만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재판소로서는 제15조의 측면에서 상황을 검토할 필요가 없었다.

6. 이행정지가 이루어진 한 사례에서, 재판소는 재판정에 선 소송 당사자의 요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해당 상황이 유효한 이행정지에 해당하는지 평가하기를 거절하였다(*Khlebik v. Ukraine*, 2017, § 82).

## II. 제15조제1항: 국가의 의무 이행정지가 유효할 수 있는 경우

### 협약 제15조제1항

“1. 전쟁 또는 기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공공의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어떠한 유럽인권협약 당사국이라도 상황의 긴급성에 의하여 엄격히 요구되는 한도 내에서 이 협약상의 의무 이행을 정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국제법상 다른 의무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 HUDOC 주제어

전쟁(15-1) - 공공의 비상사태(15-1) - 국가 존립 위협(15-1) - 이행정지(15-1) - 상황에 의하여 엄격히 요구되는 한도(15-1) - 국제적 의무(15-1)

7. 제15조제1항은 이행정지를 유효하게 하는 세 가지 조건을 규정한다.

- 첫째, 전쟁 또는 기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공공의 비상사태가 발생해야 한다.
- 둘째, 그러한 전쟁 또는 공공의 비상사태에 대응하여 취하는 조치는 상황의 긴급성에 의하여 엄격히 요구되는 한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 셋째, 이러한 조치는 국제법상 다른 의무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 A. “...전쟁 또는 기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공공의 비상사태...”

8. 재판소는 제15조제1항의 “전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해석할 의무는 없다고 하며, 어떠한 경우이든 전쟁에 준하는 실질적인 폭력이나 불안은 제15조 제1항의 두 번째 조건인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공공의 비상사태”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9.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공공의 비상사태”의 본질적이고 관습적인 의미는 명확하다. “전체 인구에 영향을 미치고 국가를 구성하는 공동체의 조직화된 삶을 위협하는 예외적인 위기 또는 비상사태의 상황”을 가리킨다(*Lawless v. Ireland (no. 3)*, 1961, § 28).

10. 비상사태는 실제이거나 급박해야 하고, 국가의 특정 지역에 국한된 위기도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공공의 비상사태에 해당할 수 있으며(예를 들어, *Ireland v. the United Kingdom*, 1978, § 205 사건에서 북아일랜드와 관련된 이행정지 및 *Aksoy v. Turkey*, 1996, § 70 사건에서 터키 남동부와 관련된 이행정지 참조), 위기 또는 위협은 공공의 안전, 건강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협약이 허용하는 통상적인 조치 또는 제한만으로는 부족할 것이 분명한 예외적인 상황이어야 한다(*Denmark, Norway, Sweden and the Netherlands v. Greece*(“그리스 사건”), 위원회 보고서, 1969, § 153).

11. 현재까지 재판소의 판례는 비상사태가 일시적이어서야 한다는 요건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적이 없으며, 실제로 사건을 보면 제15조가 의미하는 “공공의 비상사태”는 수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Ireland v. the United Kingdom*, 1978; *Brannigan and McBride v. the United Kingdom*, 1993; *Marshall v. the United Kingdom* (dec.), 2001 사건에서 북아일랜드 안보 상황 및 *A.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2009, § 178 사건에서 알카에다의 미국 본토 공격 후 안보 상황 참조).

12. 일반적으로 협약기구들은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의 존재 여부를 국가 당국의 판단에 맡겼다. 재판소가 *Ireland v. the United Kingdom*, 1978, § 207 사건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공공의 비상사태’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지는 ‘국가의 존립’을 책임지는 각 체약국이 우선 결정한다.” 국가 당국은 그 순간의 긴급한 필요와 지속적으로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그러한 비상사태의 존재 및 비상사태를 피하는데 필요한 이행중지의 성격과 범위를 결정할 때 원칙적으로 국제 판사보다 우위에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국가 당국의 폭넓은 재량에 맡겨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소는 국가가 이 부분에서 무제한의 재량권을 누리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국가의 재량은 유럽연합의 통제를 수반한다. (*Brannigan and McBride v. the United Kingdom*, 1993, § 43; *Mehmet Hasan Altan v. Turkey*, 2018, § 91; *Şahin Alpay v. Turkey*, 2018, § 75).

13. 재판소는 북아일랜드에서의 테러가 수년 동안 “영국의 영토 보전, [북아일랜드] 6개 카운티의 기관 및 북아일랜드 주민의 삶에 특히 광범위하고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였기 때문에 공공의 비상사태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결하였다(*Ireland v. the United Kingdom*, 1978, §§ 205 및 212; *Brannigan and McBride v. the United Kingdom*, 1993, § 48; *Marshall v. the United Kingdom* (dec.), 2001). 터키 남동부 PKK 테러 활동(*Aksoy v. Turkey*, 1996, § 70), 2001년 9월 11일 이후 영국에서 발생한 심각한 테러 공격의 급박한 위협(*A.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2009, § 181) 및 2016년 터키에서 시도된 군사 쿠데타(*Mehmet Hasan Altan v. Turkey*, 2018, §§ 91-93; *Şahin Alpay v. Turkey*, 2018, §§ 75-77 참조. *Kavala v. Turkey*, 2019, § 88; *Alparslan Altan v. Turkey*, 2019, §§ 73-74; *Pişkin v. Turkey*, 2020, § 59; *Atilla Taş v. Turkey*, 2021, § 83 등에서도 동일한 관찰이 반복됨)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급박성 요건을 너무 좁게 해석하여 국가가 재난에 대처하는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A.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2009, § 177).

14. 일반적으로 이행정지를 국가 당국의 판단에 맡기기는 하지만,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1967년 “대령” 쿠데타에 이은 “*그리스 사건*”(위원회 보고서, §§ 159-165 및 207)에서 위원회는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이행정지를 정당화하는 공공의 비상사태는 없었다고 결정하였다. 북아일랜드 및 터키 남동부 상황과 관련하여 상기 언급된 사건에서는 “공공의 비상사태” 존재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아니었으나, “*그리스 사건*”에서 그리스 군부가 시도한 이행정지와 관련하여서는 분명 상세하게 논란이 제기되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15. 마찬가지로, 선거 후 시위가 발생한 상황에서 예레반에 선포된 비상사태에 관하여 재판소는 그 규모 및 수반되었을지도 모르는 폭력에도 불구하고 피청구 정부는 제11조의 보호를 받는 이러한 시위를 “국가 존립을 위협한다”라고 간주할 만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으로 해당 이행정지는 제15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충분히 결론지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 재판소는 제15조 제1항의 다른 요건, 즉, 사건에서 취한 조치가 상황의 긴급성에 의하여 엄격히 요구되었고 국제법상 다른 의무에 저촉되지 않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Dareskizb Ltd v. Armenia*, 2021, §§ 62-63).

16. 제15조의 목적은 국가가 향후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행정지 조치를 취하는 것을 허용하는데 있기 때문에, 국가 존립에 대한 위협은 주로 이행정지 당시 알려진 사실과 관련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판소는 그 후에 밝혀진 정보도 고려할 수 있다(*A.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2009, § 177).

17. 다만, 이행정지가 적용되는 영토 밖에서 조치가 취해진 경우 이행정지는 적용되지 않으며 당해 정부는 취한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해당 이행정지를 이용할 수 없다(*Sakik and Others v. Turkey*, 1997, § 39 및 비슷한 판결로 *Sadak v. Turkey*, 2004, §§ 56; *Yurttas v. Turkey*, 2004, § 58; *Abdülsamet Yaman v. Turkey*, 2004, § 69 및 가장 최근의 경우로 *Barseghyan v. Armenia*, 2021, § 36 참조).

18. 협약 비준 후 체약국이 자국 영토 밖에서 군사 임무에 참여한 사례는 다수 있었으나, 현재까지 이러한 활동과 관련하여 협약 제15조에 따라 의무 이행을 정지한 국가는 없다(*Hassan v. the United Kingdom* [GC], 2014, § 101 및 동일한 판단이 반복된 *Georgia v. Russia (II)* [GC], 2021, § 139).

19. 자국의 영토 밖에서 국제 무력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의무 이행을 정지하지 않는 관행은 유럽인권협약 당사국이 그러한 상황에서는 협약 제1조의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고려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Georgia v. Russia (II)* [GC], 2021, 동일 단락). 다만, 재판소는 적대 행위가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단계에서만 해당 사건에서 피청구국의 관할권 부재를 인정하였다(*ibid.*, §§ 125–144. *Hassan v. the United Kingdom* [GC], 2014, §§ 74–80 사건에서 국가 대리인 권한 및 관련자에 대한 통제에 근거한 관할권 부분과 비교). 적대 행위 중단 이후 단계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피청구국이 점령된 영토에 행사하는 실질적인 통제권을 이유로 피청구국의 관할권에 속한다고 판결하였다(*Georgia v. Russia (II)* [GC], 2021, §§ 162–175).<sup>2</sup>

## B. “...상황의 긴급성에 의하여 엄격히 요구되는...조치...”

20. 재판소는 재판소의 검토 권한은 제15조와 관련하여 그 한계가 “특히 명백하다”라고 밝혔다(*Ireland v. the United Kingdom*, 1978, § 207):

“‘공공의 비상사태’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지 결정하고 위협이 사실이라면 해당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시도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주체는 무엇보다 “국가의 존립”을 책임지는 해당 체약국이다. 국가 당국은 그 순간의 긴급한 필요와 지속적으로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그러한 비상사태의 존재 및 비상사태를 피하는데 필요한 이행중지의 성격과 범위를 결정할 때 원칙적으로 국제 판사보다 우위에 있다. 이 문제에서 제15조 제1항은 (...) 해당 당국에 폭넓은 재량을 부여한다.”

2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서 국가가 무제한의 권한을 누리는 것은 아니며, 재판소는 해당 국가가 위기의 “긴급성에 의하여 엄격히 요구되는 한도”를 넘었는지 판단할 권한이 있다(*ibid.*). 취해진 조치가 “상황의 긴급성에 의하여 엄격히 요구되며 국제법상 다른 의무에 저촉되지 않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재판소는 본안 제소 내용을 검토한다(*Mehmet Hasan Altan v. Turkey*, 2018, § 94, *Şahin Alpay v. Turkey*, 2018, § 78 및 *Kavala v. Turkey*, 2019, § 88).

22. 재판소가 명확히 밝힌 바와 같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공공의 비상사태”의 존재가 정치적 토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 비상사태가 발생한 상태라 하더라도 국가가 취하는 모든 조치는 민주 질서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다원주의, 관용, 관대함 등 민주사회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Mehmet Hasan Altan v. Turkey*, 2018, § 210; *Şahin Alpay v. Turkey*, 2018, § 180).

23. 재판소는 엄격하게 요구하는 한도를 국가가 넘었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이행정지가 영향을 주는 권리의 성격, 비상사태에 이르게 되는 정황 및 비상사태가 벌어지는 기간 같은

<sup>2</sup> 유럽인권협약 제1조에 대한 해설서 참조.



요소에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한다(*Brannigan and McBride v. the United Kingdom*, 1993, § 43 및 *A.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2009, § 173).

24. 이때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 공공의 비상사태로 초래된 위험을 통상의 법률로 다룰 수 있는가(*Lawless v. Ireland (no. 3)*, 1961, § 36 및 *Ireland v. the United Kingdom*, 1978, § 212)
- 해당 조치는 비상사태에 실제로 대응할 수 있는가(*Brannigan and McBride v. the United Kingdom*, 1993, § 51 및 *Alparslan Altan v. Turkey*, 2019, § 118)
- 해당 조치의 활용은 그 목적에 부합하는가(*Lawless v. Ireland (no. 3)*, 1961, § 38)
- 정부는 개별 사건 및 사건이 의존하는 이행정지가 충분히 관련되어 있다고 증명할 수 있는가(국가 원수 목록에 관한 *Vedat Şorli v. Turkey*, 2021, § 46 목시적 참조)
- 이행정지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는가(*Brannigan and McBride v. the United Kingdom*, 1993, § 66)
- 이행정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검토되었는가(*ibid.*, § 54)
- 부과된 조치가 약화되었는가(*Ireland v. the United Kingdom*, 1978, § 220)
- 취해진 조치에 대한안전장치가 있었는가(*ibid.*, §§ 216–219, *Lawless v. Ireland (no. 3)*, 1961, § 37, *Brannigan and McBride v. the United Kingdom*, 1993, §§ 61–65 및 *Aksoy v. Turkey*, 1996, §§ 79–84)
- 문제가 된 권리의 중요성 및 해당 권리 제한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일반적인 목적(*ibid.*, § 76)
- 해당 조치의 사법적 통제는 실제로 가능하였는가(*ibid.*, § 78 및<sup>3</sup> *Brannigan and McBride v. the United Kingdom*, 1993, § 59)
- 조치의 비례성 및 조치에 부당한 차별이 포함되었는가(*A.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2009, § 190), 조치는 “합법적”이고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시행되었는가(*Mehmet Hasan Altan v. Turkey*, 2018, §§ 140 및 213; *Şahin Alpay v. Turkey*, 2018, §§ 119 및 183)
- 해당 법률 조항에 반하는 사법적 해석으로 인하여 법적 확실성이 훼손되지 않았는가(*Baş v. Turkey*, 2020, §§ 151–153). 예를 들어, 재판소는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면책특권을 사전에 해제하지 않고도 법관을 구금할 수 있는 “현행범(in flagrante delicto)”이라는 법적 개념의 범위를 확장하여 “범죄 조직에 속한 것으로 의심되는 법관들은 터키법이 사법부 구성원에게 부여하는 사법적 보호가 박탈되도록” 해석하는 것은 “사법부 구성원을 행정부의 간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부여되는 절차적 안전장치를 [무효화]”하는 것과 같다고 판단하였다(*ibid.*).
- 개인의 구금을 정당화하는 의심의 “합리성”에 관한 협약 제5조 제1항 제(c)호의 최소 요건을 충족하는가(*Alparslan Altan v. Turkey*, 2019, §§ 147–149, *Kavala v. Turkey*, 2019, §§ 176–196; *Baş v. Turkey*, 2020, § 200)
- 헌법재판소(*Kavala v. Turkey*, 2019, §§ 176–196)를 포함하여 법원은 협약 제5조 제4항이 의미하는 구금의 합법성에 대하여 “지체 없이” 결정하였는가(*Baş v. Turkey*, 2020, §§ 216 및 230)
- 국내 법원이 해당 문제를 고려한 경우 그 견해(*Mehmet Hasan Altan v. Turkey*, 2018, §§ 93 및 140; *Şahin Alpay v. Turkey*, 2018, §§ 77 및 119; *Alparslan Altan v. Turkey*, 2019, § 146). 체약국의 최고 국내법원이 해당 조치가 엄격하게

3 또한, *Aksoy* 이후 발생한 사건 *Demir and Others v. Turkey*, 1998, §§ 49–58; *Nuray Şen v. Turkey*, 2003, §§ 25–29; *Elçi and Others v. Turkey*, 2003, § 684; *Bilen v. Turkey*, 2006, §§ 44–50 참조.

요구되지는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경우 재판소가 그와 반대되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정당화되려면, 국내법원이 제15조 또는 동 조에 따른 재판소의 법리를 잘못 해석 또는 잘못 적용하였거나 그 결론이 명백히 불합리하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A.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2009, § 174).

25. 이러한 요소들은 보통 소급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조치가] 처음 취해지고 이어서 적용될 때 우세한 조건과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Ireland v. the United Kingdom*, 1978, § 214). 그러나 재판소는 공공의 비상사태가 있는지 평가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후에 밝혀진 정보도 고려할 수 있다(*A.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2009, § 177 사건에서 재판소는 2001년 이행정지의 통보 이후 수년이 지난 2005년 7월 런던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 및 테러 미수 사건에 주목함).

26. 제15조를 적용할 때 고려한 사항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공공의 비상사태가 여전히 지속되기는 하지만 그 강도가 떨어지게 되면 서서히 힘을 잃고 관련성이 줄어든다. 그러므로 긴급성 기준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Baş v. Turkey*, 2020, § 224). 재판소는 국가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공공의 비상사태에 대항하여 분투할 때, 당국이 적절하게 기능하고 공동체 내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우선 요건에 해당하는 각각의 안전장치와 국가가 선택한 각 행동 수단을 처음부터 한 번에 제공하라는 요구가 있다면 국가가 무방비 상태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협약 제15조의 해석은 점진적인 적응을 위한 여지를 남겨두어야 한다(*ibid.*, § 229).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기본적 권리가 간섭받는 경우라면, 이때 수반되는 부정적인 영향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재판소는 그러한 간섭이 공공 안전의 보존을 위해서도 엄격하게 요구되는지 검토할 것이다(*ibid.*, § 230).

27. 비상사태 선포 전후로 변치 않고 그대로인 법령 조항(범죄를 저질렀다고 강하게 의심하게 하는 사실적 증거의 존재를 요구하는 조항)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을 재판 전에 구금하라고 명령한 다수의 사건에서, 재판소는 당국이 제기한 의혹을 뒷받침하는 사실 증거 없이 청구인들을 구금한 것은 궁극적으로 어떠한 이행정지 조치도 적용할 수 없었으므로 협약 제15조에 규정된 한도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결론을 내리는 것은 협약 제5조 제1항 제(c)호의 최소 요건을 무효화하는 것이라고 판결하였다(*Sabuncu and Others v. Turkey*, 2020, § 183; *Kavala v. Turkey*, 2019, § 158, 또한 *Akgün v. Turkey*, 2021, § 184; *Murat Aksoy v. Turkey*, 2021, § 111; *Atilla Taş v. Turkey*, 2021, § 140 참조).

28. 제5조 제4항에 따라, 재판소는 비상사태 기간 동안 재판 전 구금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 수사 파일에 대한 접근 제한을 검토하였다. *Ahmet Hüsrev Altan v. Turkey*, 2021 사건에서는 수사 파일에 대한 접근 제한 결정이 비상사태 기간에 발효된 법령(Legislative Decree)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행정지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재판소는 첫째, 이 제한이 청구인이 체포되기 전에 내려진 FETÖ/PDY 소속 용의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이스탄불 검찰의 일반 명령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 둘째, 비상사태가 계속 유효한 상태에서 기소가 제기된 후 이 제한이 해제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이 제한하는 일반 명령은 비상사태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간주될 수 없으며, 이와 반대로 해석할 경우 협약 제5조에 규정된 안전장치가 무효화된다(§ 165).

29. 재판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설정한 제재 체제에 관한 *Al-Dulimi and Montana Management Inc. v. Switzerland* [GC], 2016, § 146 사건을 언급하며 비상사태 입법령에 그 이행을 위해 취해진 조치에 대한 사법적 감독 가능성을 배제하는 명확하고 명시적인 문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는 항상 피청구국 법원이 자의성을 피할 수 있도록 충분히 조사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Pişkin v. Turkey*, 2020, § 153). 비상사태일지라도 재판소의 제어 또는 통제 없이 국가가 법원의 관할권에서 모든 민사 청구를 배제하거나 특정 범주에 속하는 사람에게 민사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법치주의에 저촉된다(*ibid.*, *Fayed v. the United Kingdom*, 1994, § 65를 참조하되 수정이 필요할 수 있음). *Pişkin v. Turkey*, 2020 사건에서 재판소는 2016년 7월 15일에 발생한 군사 쿠데타

시도에 관여한 사실이 분명한 공무원 또는 기타 공무직을 즉시 해고하기 위해 간소화된 절차를 도입한 것은 비상사태라는 매우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정당화될 수 있다고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125에서 재판소는 해당 맥락에서 채택된 법령에 관한 베니스 위원회의 의견을 언급함). 다만, 간소화된 절차를 도입하는 법령은 이러한 해고를 정당화하는 사실적 근거 및 법적 근거에 대해 국내 법원이 수행해야 할 사법 심사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심도 있고 철저히 검토한 흔적이 없는 청구인의 사건에 내려진 판결 논리는 그 자체로 그 점에 대한 완전한 관할권 행사를 거부했음을 시사한다(§§ 150-152). 이러한 상황에서 재판소는 터키가 협약 제15조에 따라 이행정지를 통보한 것은 공정한 재판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바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ibid.*, § 153).

### C. “...다만 이러한 조치는 [유럽인권협약 당사국의] 국제법상 다른 의무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30. 이행정지가 국가의 국제법상 기타 의무에 저촉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면 재판소는 제15조 제1항의 해당 조건을 직권으로 검토할 것이다(*Lawless v. Ireland (no. 3)*, 1961, § 40).

31. *Brannigan and McBride v. the United Kingdom*, 1993 사건에서 재판소는 공식 선포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4조에 따라 유효한 이행정지의 요건이며,<sup>4</sup> 그러한 선언을 하지 않았기에 영국의 이행정지는 국제법상 의무에 저촉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검토하였다. 재판소는 해당 주장을 기각하였다. 재판소는 ICCPR 제4조의 “공식적으로 선포된”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유권적으로(authoritatively) 정의하는 것은 재판소의 역할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도 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가 있는지 검토하여야 했다. 재판소는 영국 내무장관이 하원에서 이행정지에 관하여 발언한 것이 “공식 선포의 개념에 충분히 부합한다”라고 판단하였다.<sup>5</sup>

32. *Marshall v. the United Kingdom (dec.)*, 2001 사건에서 청구인은 북아일랜드의 비상사태 조항은 “과도”하고 ICCPR 제4조에 따른 이행정지는 철회를 예상해야 한다는 유엔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인용하였다. 재판소는 해당 인용에서 당해 정부가 1995년 이후에도 이행정지를 유지하므로 ICCPR에 따른 의무 위반을 검토해야 한다고 시사하는 바는 없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이행정지가 유효하게 계속되는 것이 국제법상 정부의 의무에 저촉된다고 주장할 수 없었다.

33. *Hassan v. the United Kingdom [GC]*, 2014 사건에서 재판소는 국제분쟁 상황에서 이행정지가 부재한 경우라도 재판소가 협약 조항을 국제(인도주의)법의 원칙에 따라 재해석할 수 있는지 결정하여야 했다. 재판소는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제5조의 본문에 따르면 억류는 자유를 박탈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유가 아니지만, 제5조는 국제인도법(제네바협약 중 제3협약 및 제4협약)의 원칙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협약당사국은 분쟁 상황에서 안보를 위협하는 전쟁 포로 및 민간인의 억류를 허용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정지할 필요는 없다고 인정하였다.

34. 마찬가지로 이행정지 없는 국제 무력 분쟁에 관한 *Georgia v. Russia (II) [GC]*, 2021 사건에서 재판소가 명확히 밝힌 방법론은 사건의 각 측면 및 위반이 의심되는 협약의 조에

4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4조 제1항은 관련 부분에서 “공공의 비상사태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그 존재가 공식적으로 선포된 시기에...”라고 규정한다.

5 *Cyprus v. Turkey* 사건에서 위원회의 결론(1976년 7월 10일 위원회 보고서 § 527)인 “제15조는 계엄령 또는 비상사태 선포처럼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이행정지 행위를 요구하며,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닌데도 당해 유럽인권협약 당사국이 그러한 행위를 선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5조는 적용할 수 없다”와 비교

대해, 협약 조항과 국제인도법(IHL) 규칙으로 형성된 두 법제 간 충돌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95). 즉, 재판소는 IHL의 요건을 다음과 비교하였다.

- 살해 또는 학대받거나 거주지 방화 또는 약탈당한 민간인에 관한 협약 제2조, 제3조 및 제8조와 제1의정서 제1조(§§ 194-199)
- 민간인의 대우와 구금에 관한 협약 제3조 및 제5조(§§ 234-237)
- 전쟁 포로의 대우에 관한 협약 제3조(§§ 266-267)
- 실향민의 이동의 자유에 관한 제4의정서 제2조(§§ 290-291)
- 공립 학교 및 도서관의 약탈 또는 파괴 의혹에 관한 제1의정서 제2조(§§ 310-311)
- 조사 의무에 관한 협약 제2조(§§ 323-325)

### III. 제15조제2항: 이행정지할 수 없는 권리

#### 협약 제15조제2항

“2. 적법한 전쟁행위로 인한 사망의 경우를 제외한 제2조 또는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7조에 대하여는 본 조를 근거로 한 어떠한 이행정지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35. 제15조제2항은 특정한 권리가 이행정지되는 것을 막는다. 이러한 권리는 제15조제2항의 본문에 따라 적법한 전쟁행위로 인한 사망의 경우를 제외한 제2조(생명권), 제3조(고문 및 그 외 형태의 학대 금지), 제4조제1항(노예 또는 예속 상태의 금지) 및 제7조(죄형법정주의)가 있다.

36. 협약의 추가 의정서 중 세 가지도 의정서에 속한 특정 권리의 이행정지를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는 제6의정서(평시 사형 폐지 및 전시 사형 제한), 제7의정서(동의정서 제4조에 포함된 일사부재리(ne bis in idem)의 원칙만 적용), 제13의정서(사형제도의 완전 폐지)가 있다.<sup>6</sup>

37. 제15조제2항(및 제6, 제7, 제13의정서)의 효력은 해당 조항이 언급하는 권리가 체약국의 어떠한 이행정지에도 상관없이 전시 또는 공공의 비상사태 기간에도 계속 적용된다는 것이다.

38. 협약 제2조 및 제7조와 관련하여, 해당 권리에 이미 포함된 예외도 계속 적용된다.

39. 따라서 제2조와 관련하여, 제2조제2항제(a)호 내지 제(c)호에 명시된 상황(불법 폭력으로부터 누군가를 방어, 합법적으로 구금된 사람의 적법한 체포 또는 도주 방지, 폭동 또는 반란 진압의 목적으로 적법하게 취한 조치)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의 무력 사용으로 인한 생명 박탈은 동 조를 위배하지 않는다. 제15조 제2항은 적법한 전쟁 행위가 초래한 사망의 경우 생명권 침해가 아니라는 예외도 추가한다.

40. 마찬가지로, 제7조와 관련하여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금지는 제7조 제2항의 규정, 즉 문명국가가 승인한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범행 당시 범죄에 해당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당해인을 재판하고 처벌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적용된다.

6. 제6의정서 제3조, 제7의정서 제4조 제3항 및 제13의정서 제2조.

## IV. 제15조제3항: 통보 요건

### 협약 제15조제3항

“3. 의무 이행정지 권리를 행사하는 유럽인권협약 당사국이라면 취한 조치와 그 이유를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충분히 통보하여야 한다. 당해 국가는 그러한 조치가 언제 중지되고 협약 규정이 언제 다시 완전히 실행될 것인지 역시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HUDOC 주제어

이행정지의 통보(15-3)

41. 사무총장에게 통보하는 일차적인 목적은 해당 이행정지의 공개에 있다. 나아가, 협약은 집단 집행 체제이며 이행정지 사실은 사무총장을 거쳐 다른 체약국에 통보된다. 각료회의(Committee of Ministers)의 결의에 따라 제15조제3항에 준거하여 사무총장에게 전달된 정보는 사무총장이 직접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체약국에 전달해야 한다(*Greece v. the United Kingdom*, 1958, § 158).
42. 이행정지가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통지되지 않는 경우, 제15조는 피청구국이 취하는 조치에 적용되지 않는다(*Cyprus v. Turkey*, 1983년 10월 4일 위원회 보고서, §§ 66-68).
43. 취해진 조치와 그 사유를 사무총장에게 통지하는 요건은 일반적으로 서한을 작성하고 비상사태 조치의 근거가 되는 법적 근거의 사본을 조치 목적 설명과 함께 첨부하면 충족된다(*Lawless v. Ireland (no. 3)*, 1961, § 47). 관련된 모든 조치의 사본이 제공되지 않으면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그리스 사건*”, 위원회 보고서, § 81(1) 및 (2)).
44. *Greece v. the United Kingdom*, 1958 사건에서, 위원회는 제15조제3항의 표현으로 보아 문제의 조치가 도입되기 전에 통지할 필요가 없음이 분명하지만, 또한 본 조항의 표현은 통지해야 하는 시기 또는 사무총장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에 대한 지침 역시 제공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위원회는 문제의 조치에 관하여 다른 유럽인권협약 당사국이 조치와 연관된 이행정지의 성격과 범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와 더불어 불가피한 지연 없이 통보할 주체는 당해 국가라고 보았다. 이 경우, 이행정지 조치와 통보 간 3개월의 기간은 지나치게 길었고, 주장된 비상사태에서 비롯된 행정 지연을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었다. “*그리스 사건*”에서 특정한 조치를 취하고 4개월이 지난 후 통보한 것도 마찬가지였다(위원회 보고서, § 81(3)). 이와는 대조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12일 후 통보한 것은 충분하다고 보았다(*Lawless v. Ireland (no. 3)*, 1961, § 47).
45. 재판소는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국가의 통지가 제15조 제3항에 규정된 형식 요건, 즉 협약을 이행정지하는 수단으로 취한 조치와 그 사유를 유럽평의회에 충분히 통보하라는 요건을 준수하는지 직권으로 심사할 권한이 있다(*Aksoy v. Turkey*, 1996, §§ 85-86).
46. 재판소는 당사자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이행정지 통보에 협약의 어느 조항이 관련되었는지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아도 이러한 형식 요건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였다(*Mehmet Hasan Altan v. Turkey*, 2018, § 89; *Şahin Alpay v. Turkey*, 2018, § 73; *Ahmet Hüsrev Altan v. Turkey*, 2021, §§ 100-102).
47. 재판소는 이행정지의 시간적 관할(*ratione temporis*) 또는 물적 관할(*ratione materiae*)에 관한 문제를 직권으로 제기할 수도 있다(*Alparslan Altan v. Turkey*, 2019, § 74).

48. 재판소는 제15조제3항이 비상사태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상시적 검토 요건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결하기도 하였다(*Brannigan and McBride v. the United Kingdom*, 1993, § 54).

49. 마지막으로, (제15조제3항의 마지막 문장에 따라) 이행정지가 철회된 후 취해진 조치와 관련된 모든 사건에서 재판소는 제소가 제기된 협약의 관련 조항이 완전히 적용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사건을 심사할 것이다. 그러나 이로써 사건의 배경 상황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재판소는 이러한 상황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할지 결정하고, 그 상황이 해당 조항의 적용 가능한 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데, 이는 해당 조항의 특정 표현 및 조항의 전체적인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이루어진다(제5조와 관련된 *Brogan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1988, § 48 참조).

## 인용 판례 목록

이 해설서에 인용된 판례는 재판소가 내린 판결 또는 결정과 유럽인권위원회(“위원회”)의 결정 또는 보고서를 의미합니다.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모든 인용문은 소재판부(Chamber)가 선고한 본안판결(judgment on the merits)에 대한 것입니다. 약칭 “(dec.)”은 재판소의 결정(decision)에서 인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GC]”는 해당 사건이 대재판부(Grand Chamber)에서 심리된 것임을 나타냅니다.

소재판부의 판단 중 이 개정판 발간 당시 협약 제44조에서 의미하는 최종확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래 목록에 별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협약 제44조제2항에는 “(a) 당사자가 사건을 대재판부 회부를 요청하지 않기로 선언하는 경우, (b) 당사자가 대재판부 회부를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경우 또는 (c) 대재판부의 패널(panel)이 제43조에 따른 회부 요청을 거부한 경우 소재판부의 판결은 최종적으로 확정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재판부의 패널이 회부 요청을 수락한 경우, 소재판부의 판단은 최종판단이 아니며 따라서 법적 효력이 없고, 이후 대재판부의 판단이 최종판단이 됩니다.

이 해설서의 전자판에 인용된 사건의 하이퍼링크는 재판소 판례(대재판부, 소재판부 및 위원회 판결과 결정, 언급된 사건, 권고적 의견 및 판례정보노트(Case-Law Information Note)의 결정요지(legal summary), 위원회의 판례(결정 및 보고서), 각료위원회 결의에 접속할 수 있는 HUDOC 데이터베이스(<http://hudoc.echr.coe.int>)로 연결합니다.

재판소는 두 공식 언어인 영어나 프랑스어 중 하나 또는 두 언어 모두로 판결과 결정을 내립니다. HUDOC는 다수의 주요 판례를 30가지 이상의 비공식 언어로 번역한 번역본 및 제3자가 작성한 100여 개 온라인 판례집으로 연결되는 링크도 제공합니다.

### —A—

*A.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no. 3455/05, ECHR 2009  
*Abdülşamet Yaman v. Turkey*, no. 32446/96, 2 November 2004  
*Ahmet Hüsrev Altan v. Turkey*, no. 13252/17, 13 April 2021  
*Akgün v. Turkey*, no. 19699/18, 20 July 2021  
*Aksoy v. Turkey*, 18 December 1996,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6-VI  
*Al-Dulimi and Montana Management Inc. v. Switzerland* [GC], no. 5809/08, 21 June 2016  
*Alparslan Altan v. Turkey*, no. 12778/17, 16 April 2019  
*Atilla Taş v. Turkey*, no. 72/17, 19 January 2021

### —B—

*Barseghyan v. Armenia*, no. 17804/09, 21 September 2021  
*Baş v. Turkey*, no. 66448/17, 3 March 2020  
*Bilen v. Turkey*, no. 34482/97, 21 February 2006  
*Brannigan and McBride v. the United Kingdom*, 26 May 1993, Series A no. 258-B  
*Brogan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29 November 1988, Series A no. 145-B



—C—

*Cyprus v. Turkey*, nos. 6780/74 and 6950/75, Commission report of 10 July 1976  
*Cyprus v. Turkey*, no. 8007/77, Commission report of 6 October 1983

—D—

*Dareskizb Ltd v. Armenia*, no. 61737/08, 21 September 2021  
*Demir and Others v. Turkey*, 23 September 1998,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8-VI  
*Denmark, Norway, Sweden and the Netherlands v. Greece* (the “Greek case”), nos. 3321/67 and  
3 others, Commission report of 5 November 1969, Yearbook 12

—E—

*Elçi and Others v. Turkey*, nos. 23145/93 and 25091/94, 13 November 2003

—F—

*Fayed v. the United Kingdom*, 21 September 1994, Series A no. 294-B

—G—

*Georgia v. Russia (II)* [GC], no. 38263/08, 21 January 2021  
*Greece v. the United Kingdom*, no. 176/56, Commission report of 26 September 1958

—H—

*Hassan v. the United Kingdom* [GC], no. 29750/09, ECHR 2014

—I—

*Ireland v. the United Kingdom*, 18 January 1978, Series A no. 25

—J—

*Jeronovičs v. Latvia*, no. 44898/10, 5 July 2016

—K—

*Kavala v. Turkey*, no. 28749/18, 10 December 2019  
*Khlebig v. Ukraine*, no. 2945/16, 25 July 2017

—L—

*Lawless v. Ireland (no. 3)*, 1 July 1961, Series A no. 3

—M—

*Marshall v. the United Kingdom* (dec.), no. 41571/98, 10 July 2001

*Mehmet Hasan Altan v. Turkey*, no. 13237/17, 20 March 2018

*Murat Aksoy v. Turkey*, no. 80/17, 13 April 2021

—N—

*Nuray Şen v. Turkey*, no. 41478/98, 17 June 2003

—O—

*Pişkin v. Turkey*, no. 33399/18, 15 December 2020

—S—

*Sabuncu and Others v. Turkey*, no. 23199/17, 10 November 2020

*Sadak v. Turkey*, nos. 25142/94 and 27099/95, 8 April 2004

*Şahin Alpay v. Turkey*, no. 16538/17, 20 March 2018

*Sakık and Others v. Turkey*, 26 November 1997,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7-VII

—T—

*Terheş v. Romania* (dec.), no. 49933/20, 13 April 2021

—V—

*Vedat Şorli v. Turkey*, no. 42048/19, 19 October 2021

—Y—

*Yurttas v. Turkey*, nos. 25143/94 and 27098/95, 27 May 2004